| 의안번호 | 제 | 호 |
|-------|-------|----|
| 의 결 | 2023. | |
| 연 월 일 | (제 | 회) |

| 의 | |
|------------------|--|
| 의 결 사 항 | |
| 사 | |
| 항 | |

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| 제 출 자 | 고 성 군 수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출연월일 | 2023. 10. 6. |

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 호

제출연월일: 2023. 10. 6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제정이유

당항포관광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,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운영시간, 이용료, 이용료 환불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안 제6조)

다. 이용제한,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 ~ 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나. 예산조치: 2024년 당초예산 확보 계획

다. 합의

1) 기획예산담당관(예산담당): 예산합의 완료

2)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4371(2023. 9. 4.)]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3-1374호

- 가) 예고기간: 2023. 8. 25. ~ 2023. 9. 14.(20일간)
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 · 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① 당항포관광지 내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유원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당항포랜드(이하 "당항포랜드"라 한다)로 한다.

- ② 당항포랜드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에 둔다. 제3조(운영시간 등) ① 당항포랜드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- 1. 3월부터 10월까지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- 2.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: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
- 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.
- ③ 당항포랜드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매주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.
 - 2. 1월 1일, 설날·추석 당일
 - 3. 그 밖에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가 시설물의 유지·보수 관리

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항포랜드의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, 매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이용료) 당항포랜드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이용료 환불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여야 한다.

- 1.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
- 2.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
제6조(이용료의 처리)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 금고에 납입해야하며, 다음날이 토요일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. 다만, 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7조(이용제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게 당항포랜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- 1.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
- 2.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
- 3.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
- 4.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
- 5.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

제8조(위탁관리) 군수는 당항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 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[별표 1]

당항포랜드 이용료(제4조 관련)

| 구 | 분 | 이용료(원)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바이킹 | 소인 | 4,000 | - 유아: 4세이하 |
| 11 1/2 | 대인 | 4,500 | - 소인: 5세이상~12세이하 |
| 범퍼카 | 소인 | 4,000 | - 대인: 13세이상 |
| | 대인 | 4,500 | |
| 우주전투기 | 소인 | 4,000 | |
| | 대인 | 4,500 | |
| 슬라이딩카 | 소인 | 4,000 | |
| | 대인 | 4,500 | |
| 공룡열차 | 소인 | 4,000 | |
| | 대인 | 4,500 | |
| 아스트로 | 소인 | 4,000 | |
| | 대인 | 4,500 | |
| 범퍼보트 | 소인 | 6,000 | |
| | 대인 | 8,000 | |
| | 보호자+유아 | 8,000 | |
| 회전관람차 | 소인 | 4,000 | |
| | 대인 | 4,500 | |

붙임

비용추계서

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관련 조문

- 제1조(목적):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

나. 비용발생 요인: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

2. 비용추계의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1) 사업대상: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

2) 사업규모: 당항포랜드 가설 건축물 2동, 유기시설 8종

- 세입: 위탁비 37,000,000원

- 세출: 수선비 10,000,000원

나. 추계의 결과

| 연도 구분 | 1차년도 (2024년) | 2차년도 (2025년) | 3차년도 (2026년) | 4차년도 (2027년) | 5차년도 (2028년) | 합계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세입 | 40,000 | 45,000 | 50,000 | 55,000 | 60,000 | 250,000 |
| 세출 | 10,000 | 15,000 | 20,000 | 20,000 | 30,000 | 95,000 |

(단위: 천원)

다. 재원조달방안: 고성군 자체재원(군비)으로 조달

작성자: 관광지사업소장 전 인 관

참고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 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・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- 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- 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- 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- 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제21조(수탁재산의 위탁료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.

1. 수입

- 가.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
- 나.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·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(轉貸)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다.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 수입

2. 지출

- 가.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,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
- 나.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,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
-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7. 20.>
-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,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.
-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계산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계산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.